

-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일
-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일

제안 이유
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-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상향 조정
  - 공휴일 30,000원 → 공휴일(오전) 40,000원  
공휴일(전일) 50,000원
  - 평 일 15,000원 → 평 일 20,000원

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시험관리관의 수당이 중앙인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,

- 그 동안 우리 도는 같은 근무여건임에도 중앙인사위원회나 타시·도보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에서 약 1만원정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적잖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면서 시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험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수당을 현행 공휴일 3만원에서 4만원(오전) 또는 5만원(전일)으로, 평일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2004년도 시험관리관 종사자 연누계인원과 예산집행액, 그리고 조례개정시 연간 추가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※ 타시·도별 시험 감독수당 지급 기준액

시 도 별	휴일오전	평 일
중앙인사위	40,000원	20,000원
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경북	40,000원	20,000원
부산 충청 제주 경서	30,000원	15,000원

붙 임 :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